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3가합55493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제타게임스

5. 주식회사 파이퍼게임스

6. 주식회사 D

7. 주식회사 누클리어게임스

8. E

9. F

변론 종결2014. 9. 18. (피고1., 4., 5., 6., 7.)

2014. 10. 23. (피고2.)

2014. 12. 23. (피고 3., 8., 9.)

판결 선고2015. 1.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982,844,396원 및 그 중 1,940,004,108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부터, 31,992,068원에 대하여는 2013. 10. 28.부터 각 2014. 8.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제타게임스, 주식회사 파이프게임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누클리어게임스는 피고 주식회사 A, B, C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950,819,398원 및 그 중 1,940,004,108원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제타게임스, 주식회사 파이프게임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누클리어게임스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F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7901분의 395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2013.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33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F 사이에 2013.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는 피고 C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7. 5. 접수 제28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1, 2, 3차 보증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제타게임스 주식회사 파이프게임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누클리어게임스(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2, 3차 보증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1차 보증	2010. 4. 6.	4,750만 원(4,250만 원으로 변경)	2011. 4. 6.(2013. 10. 4.로 변경)	국민은행	2010. 4. 21.(2013. 10. 4.)	5,000만 원
2차 보증	2012. 3. 15.	9억 5,000만 원	2013. 12. 31.	한국수출입은행	2012. 3. 20.(2013. 12. 31.)	10억 원
3차 보증	2012. 3. 15.	9억 5,000만 원	2013. 12. 31.	한국수출입은행	2012. 3. 20.(2013. 12. 31.)	10억 원

2) 위 각 보증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는 2013. 6. 28.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3. 10. 14. 한국수출입은행에 2, 3차 보증에 따라 1,940,004,108원(2차 970,002,054원 + 3차 970,002,054원), 2013. 10. 28. 국민은행에 1차 보증에 따라 31,992,0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가 납부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차 보증의 경우 32,93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차 보증의 경우 5,221,090원, 3차 보증의 경우 5,221,090원이다. 또한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373,11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901분의 3950.5 지분에 관하여 2013. 3. 22. 피고 E 앞으로 2013.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7. 5. 피고 F 앞으로 2013.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폐지

피고 A는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2014. 5. 29.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구상금 합계 1,982,844,396원(1, 2, 3차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1,971,996,176원 + 1, 2, 3차 보증의 추가보증료 10,475,110원 + 채권보전비용 373,110원) 및 그 중 2, 3차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1,940,004,10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3. 10. 14.부터, 1차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31,992,06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3.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8. 26.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제타게임스, 파이퍼게임스, D, 누클리어게임스는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구상금 합계 1,950,819,398원(2, 3차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1,940,004,108원 + 2, 3차 보증의 추가보증료 10,442,180원 + 채권보전비용 373,1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940,004,10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3.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8. 26.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파산절차가 완료되어 면책되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폐지되었을 뿐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이 그 책임재산인지 여부

갑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5,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901분의 3950.5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피고 C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000평(약 3305.78m²)에 관하여 2009. 8. 7. 매도인 G, 매수인 피고 E와 H,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그 중 절반인 1,653㎡에 관하여 2009. 8. 28. 매도인 G,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매도인 G은, 피고 E가 그의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등기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줄 것을 부탁하여 위 2009. 8. 2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실제 매수인은 피고 E라는 취지의 확인서(을다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3. 피고 C과 H 앞으로 각 2009.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901분의 165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0. 14. 공유물 분할에 따라 각

7901분의 2297.5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④ 피고 E와 H가 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도 피고 E가 부담하였다.

⑤ 200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드단6684호로 피고 E와 전 배우자 I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 E가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의사로 피고 C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이 그 책임재산인지 여부

갑 제7호증의 2, 을나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만을 신탁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위 부동산은 피고 C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 E 명의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2. 피고 C 앞으로 2003. 1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위 부동산 지분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피고 E의 주소지에 있는 초월농협에서 납부된 점에 비추어, 피고 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 E가 소유자와 같이 위 부동산 지분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E는 2010. 2. 25. 친구인 피고 F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던 중, 2013. 6.경 피고 C 명의의 위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 E와 피고 F는 위 대여원리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지분을 4,0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F는 피고 E에게 2013. 6.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차액 1,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위 부동산은 피고 E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처분되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피고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제타게임스, 파이퍼게임스, D, 누클리어게임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이지웅

판사장민하

별지